

방화사건의 수사 사례

송재철 <화재조사 전문가>

1989년 11월 23일과 24일 신문과 방송의 뉴스들은 온통 11월 22일 새벽 01:40경 경기도 시흥시 광석1동 산4번지 무지개 농장 진입 농로상에서 불에 탄 프레스토 승용차의 보도로 꽂혔다.

승용차가 한 대쯤 탔다고 해서 마스크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일은 못되지만 이 사건은 그런대로 마스크이 집중보도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번호판이 떼어진 채 홀랑 탄 승용차엔 남녀로 보이는 사체 2구가 소사되어 있었으며 더구나 운전석의 남자로 보이는 사체는 가는 철사줄로 온몸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별의 별 살해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홍미거리의 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날이 밝자 주변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30여 m쯤 떨어진 야산에서 꾸겨진 서울 3모 33××호의 승용차 번호판 2개를 발견했고 차대번호와 함께 조회하여 이 차는 1987년 9월 서울 상계동 H씨가 새차를 구입한 후 차량등록하러 갔다가 잃어버린 것이며, 번호는 서울 송파에 사는 J씨가 1988년 8월 인천에서 잃어버린 것임을 알아냈다. 수사자들의 신원파악에 난감함이 없지 않았으나 J씨로부터 자기의 차를 처삼촌되는 사람이

자주 빌려 타고 다녔다는 사실과 그가 불륜행각을 하고 다녀 주변의 눈총도 받았고 남자가 가끔 다투였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므로 이들의 신원파악에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41세남 남자인 황○○과 27세남 권○○여인의 관계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1986년 11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모 기금의 운전기사와, 건물관리용역회사 엘리베이터걸로 일하다가 서로 만나 알게되어 정을 통해오다가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1987년 9월에 같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황씨는 부인과 별거하고 권여인과 지난 10월까지 서울 구로구 시흥동에 있는 M연립주택 지하에 단칸방을 세 내어 동거를 해 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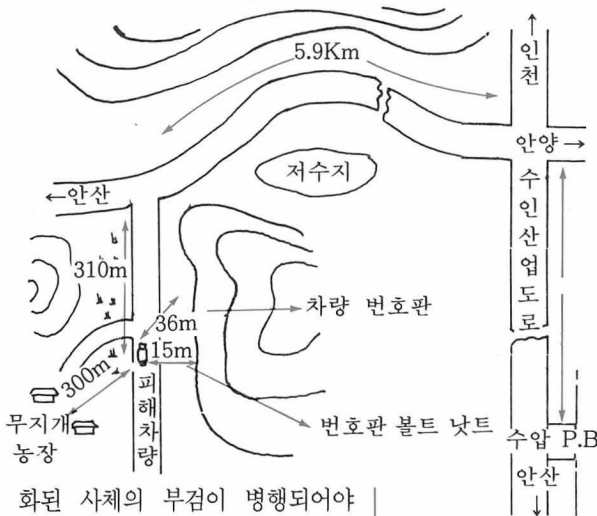
으며, 황씨가 자식이 둘이나 있는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권여인의 가족들이 결합을 반대하며 성화를 해 권여인은 거처를 언니집으로 옮겼고 마포에 있는 모 오피스텔로 직장을 옮겨 이들이 만나는 빈도가 줄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불 탄 승용차 트렁크속에 낚시도구와 부탄버너 등 취사도구 잔재가 있어 수사자들은 일견 근처 물왕리 저수지에 낚시를 즐기러 왔던 아베크족들인데 불량배등에 의해 강제 납치되었거나 치정에 얽힌 원한에 의해 변을 당한 피해자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됨으로써 조사에 한 숨을 돌리게 되었다.

화재현장 조사도 조사지만 백골



<외부 도장은 물론 타이어까지 완소된 프레스토차의 외관>



<비닐을 덮어 놓은 불 탄 승용차>

화된 사체의 부검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소화차량 외부와 내부상황에 대한 육안 관찰과 촬영 후 부검팀에 의해 2구의 사체는 차량밖으로 꺼내어 졌으나 워낙 부스러질 정도로 사체의 소화도가 심해 설골골절이나 기도매연의 검출여부 판단은 어렵겠다는 느낌이었지만 최소한 폐부분에서의 매연흡착여부에 기대를 걸어보고 운전석에 철사로 매어진채 소사된 사체의 철사매듭과 감긴 형태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철사줄은 결절등이 용

이한 난로연통 고착용으로 많이 쓰이는 가는 철사줄을 두줄로 하여 목부분을 두번감고 몸 앞쪽에서 두번을 묶었고 가슴부분에서는 두팔이 타서 떨어졌지만 겨드랑이 밑을 지났고 계속 몸 하부로 내려온 철사줄은 변속 레버에 묶어 놓았음이 분명하였다.

부검결과 운전석의 소사체는 남자이고 폐에서 매연이 검출되었으

며 조수석 소사체는 여자로서 일체 결박없이 폐에서 매연이 검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화재당시 여자는 이미 숨을 멈춘 상태이고 남자는 숨을 쉬고 있었음이 분명해져 여러가지 의문이 한단계씩 정리되어 갔다.

이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가되어야 할 것은 이 화재가 승용차에 탄 채 소사된 두 남녀의 행위였는가 아니면 외부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였느냐 하는 점을 밝힐 확인인 것이다.

우선 가정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만약 외부에 의한 범죄라면 여자만 살해하고 남자만 산채 데려와서 좁은 차속 공간에서 몇명이 운전자를 순순히 묶어 놓을 수가 있는가, 더구나 양팔을 들어 겨드랑이 밑으로 철사줄을 돌려가며 묶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여자와 같이 남자도 살해하고 방화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편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해 볼 수 있는 점이다.



<○ 표는 운전석 창문유리의 비산 흔적이고 조수석 창문 유리는 사진좌측 눈으로 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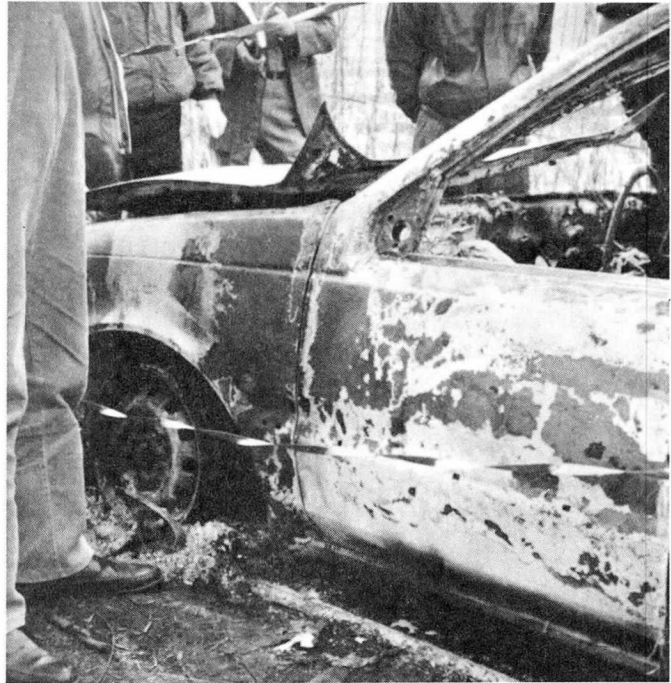
또 차의 번호판을 떼어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려 한 것은 그 차나 번호판이 모두 남의 것이긴 하지만 판으로도 분명히 자기가 노출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었다.

지금까지 이 차량화재가 내부에서 소사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 범행이겠는가 아니면 외부자들이 이들을 살해하고 방화를 한 것이겠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가정을 해 보았으나 이 사건은 소사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판단할 간단하고도 중요한 증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현장에 소훼된 승용차의 운전석 창유리와 조수석 창유리가 좌우 길바닥과 논바닥에 박살이 난 채 각각 4m이상씩 멀리 흩어진 점이다.

이 현상은 차내부에서 탄 물질이 석유였거나 또 외부에서 문을 열거나 창문을 내리고 불을 질렀다 해도 설명이 안되는 현상인 것이다.

다시말해 이 승용차는 분명히 모든 문과 창이 닫혀진 상황에서 다량의 고인화성(저인화점)인 액체 가연물, 즉 휘발성이 강한 유류를 운전석과 조수석에 붓고 소사자 자신이 불을 붙여 외부인에 의해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차창문은 유리 받침이 모두 달혀져 있다.〉

석유는 상온(常溫)에서 증발 속도가 낮기 때문에 폭발력은 고사하고 인화초차 되질 않아 심지 역할을 할 다른 가연물에 부어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때라도 유리창이 닫힌 채 점화 후 차문이 닫히면 자연 소화(消火)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운전석과 조수석 창유리가 박살이 나면서 비산된 현상은 내부에서 연소가(실제는 폭발적 연소현상) 상당량의 압력이 수반됐어야만 가능한 것으로서 뒷좌석 양 창유리와 강화된 전·후면 유리는 폭발이 이루어진 후 계속된 연소과정에서 흘러 녹아 내린 점은 유류 살포위치가 앞 좌석쪽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사자의 살해 또는 결박과정의 설명은 차치하고 누군

가 차내에 고인화성 유류를 뿌리고 방화하려면 반드시 창유리를 내렸거나 문을 연 상태이어야만 화원(火源)의 접근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때는 열린 차문이나 창유리를 통해 결과 만큼의 압력이 분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점화자가 크게 화상 이상의 흔적을 남겨야만 하게 되는 것이고 창유리의 박살 비산현상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이 승용차의 화재는 세상에서 추측하는 바와 같이 차량 밖에 있던 어떤 사람들에 의한 피살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남자가 여자를 먼저 살해하고 타살을 가장하기 위해 기름을 뿌리고, 자신을 묶은 뒤에 점화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